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93

발의연월일: 2024. 6. 20.

발 의 자: 강명구·구자근·주호영

서일준 • 박성민 • 박준태

조지연 · 서명옥 · 임종득

성일종 · 김용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차입한 주식을 매도하고, 실제로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투자 기법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음. 차입공매도를 위해서는 매도 이전에 주식을 빌리는 대차(대주) 거래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이대차(대주) 거래를 별도의 시스템 없이 전화나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진행하고 있으며, 차입 내역도 수기(手記)로 입력하고 있음.

이처럼 체계적인 시스템 없이 운용되는 거래 환경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입공매도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의 순기능보다 불공 정 거래의 가능성, 외국인·기관과 개인 간의 불평등 논란 등 역기능 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지난 5월, 글로벌 투자은행의 대규모 불법 무 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면서 공매도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따라서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매도 거래를 하려는 기관투자자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매도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80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증권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를 하려는 기관투자자는 전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매도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 ⑤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43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18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매도 주문을 체결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증권시장에서 공매도 거래 를 하려는 기관투자자는 전자 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 록 공매도전산시스템(이하 "전 산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 여 이용하여야 한다. ⑤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 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 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 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 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제443조(벌칙) ①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 ~ 9. (생 략) <u><신 설></u>

②·③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9의2. 제18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
하고 공매도 주문을 체결한
자

②・③ (현행과 같음)